

출판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성인간호학회 회칙 제 8조 학회임원의 임무규정에 따라 구성된 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12인 내외의 위원을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1인의 영문초록교정위원과 1인의 통계자문위원을 둔다.

제 3조(절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성인간호학회 실행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에 인준을 받는다.

제4조(업무) 위원회는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실행이사회를 거쳐 전체 이사회에 보고한다.

1.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
 - 1) 편집에 관한 사항
 -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 여부의 결정
 - 3) 게재료의 결정
2. 학술 자료의 발간
 - 1)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워크숍에 관한 사항
 - 1) 출판위원 및 심사위원의 워크숍
 - 2) 회원의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4. 학술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1)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학술지 연례 평가 준비
 - 2) SCOPUS 평가 관련 준비
 - 3) 기타 학술지 평가 관련 준비
5. 출판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6. 심사위원의 선정과 관리
 - 1) 논문심사를 위해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출판위원장은 심사위원장이 된다.
심사위원 선정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2) 위원회는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심사 절차를 관리한다.
7. 기타 실행이사회에서 회부된 사항의 연구심의 및 결정

부칙

1. 이 규정은 한국성인간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1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6년 8월부터 시행한다.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기준과 절차

1. (자격기준) 논문 심사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 ① 성인간호학회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자
- ② 간호학 또는 관련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③ 대학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논문 심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④ 각 분야에 대해 최신지견을 갖춘 자

단, 위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 중에서 본 학회지의 논문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판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출판(편집)위원회의 심의, 선정을 거쳐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또한 연구(출판)윤리를 위반한 자는 심사위원 선정에서 제외한다.

2. (선정)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에서 세부 전공영역별, 개념별, 연구방법별 안배를 고려한다.

3. (정원) 논문 심사위원 수는 특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100명 내외로 한다.

4. (절차) 전국 간호대학 또는 간호학과 교수 중 논문심사위원 기준에 적합한 위원을 출판위원장이 추천하면 출판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하여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학회장이 선정된 위원을 위촉한다.

5. (임기) 논문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분야별 전문성과 일관성 있는 심사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연임을 2회 연장(연속할 경우, 최대 6년)할 수 있다.

6. (특별심사위원) 논문의 주개념이 매우 독특하여 보다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판위원회에서 임의로 특별심사위원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다.

7. (자격 취소와 임기 정지) 논문심사 태도가 불성실한 경우(예: 부적절한 이유의 심사거부, 이유 없는 심사지연, 무성의한 심사나 고의적/악의적 심사평 등)에는 심사위원 자격을 편집위원회에서 재검토하여 자격을 취소하여 임기를 정지할 수 있다.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를 위반한 위원은 심사위원 자격을 즉시 취소한다.

성인간호학회지 논문심사 규정

1. 한국성인간호학회 회칙 제 8조 7항 및 본회 출판위원회 규정 제 4조 6항에 따라 성인간호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본 규정을 둔다.
2.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른다.
3. 논문의 연구 개념이 성인간호학 영역과 관련된 경우 게재가능하다.
4. 논문은 간호학 연구 보고서를 원저에 한하여 심사하며 간호학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 역시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학위논문인 경우 논문의 제1저자는 학위 수여자이며,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한다.
5. 논문의 제1저자와 공동저자는 구분하여 표기하되 소속을 명시한다.
첫 번째 표기되는 저자가 제1저자이며, 그 다음부터 표기되는 저자는 공동저자로 구분하되 교신저자는 별도로 표기한다.
6. 저자됨(authorship)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고,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가.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공헌을 하고,
나.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다.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7. 투고자격과 투고요령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8. 논문 1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며,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1인의 출판위원이 최종 심사를 한다. 영문교정위원과 통계자문위원은 별도로 두며 출판위원회에서 위촉한다.
9. 영문초록의 심사는 일차적으로 심사위원이 검토하며, 영문초록 교정위원이나 영문 편집위원에게 의뢰한다.
10.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11. 논문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개념분석, 종설, Q방
법론 평가 기준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12. 심사결과는 심사총평 및 심사평가 세부 내용으로 작성하고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 및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나.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출판위원이 최종 심사 후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다.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 다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라. '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 ① 연구주제가 독창적이지 않거나 간호학적 의의가 결여되는 경우
 - ② 연구내용이나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
 - ③ 연구결과가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뚜렷하지 않은 경우
 - ④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 심사 결과에서 '매우 부족하다'로 평가된 항목이 30% 이상인 경우
 - ⑥ 본 학회지의 윤리규정 및 기타의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 ⑦ 기타(심사위원 및 출판위원이 타당한 게재불가 사유를 제시해야 함)
 마. ⑥의 윤리규정 및 기타 연구윤리 위반 여부는 출판(편집)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바.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저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3.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가능' 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였을 경우 게재가능으로 판정

한다. 만일, 3인의 심사위원이 가부판정을 확실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관련심사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14.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하면 최종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15. 성인간호학회의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심사위원은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심사자는 평가의견서 작성 시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심사자 개인의 목적을 위해 투고자에게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② 심사자는 전문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검증되지 않은 심사자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나 투고자와의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 평가하지 않는다.
 - ③ 심사자는 의뢰된 평가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면 평가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는다.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인용하지 않는다.
 - ④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를 발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16.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논문이 학회지 투고규정에 맞지 않다고 출판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는다.
17.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촉 후 14일 이내에 원고를 심사

하고, 심사결과를 온라인 상에 탑재하여야 한다. 일정 기일이 지나도 심사결과를 탑재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출판위원장 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18. 심사결과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수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19. 수정된 논문이 제출되면 출판(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은 저자가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1주일 이내에 심의한다.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이 미비한 경우, 추가수정이 필요한 경우, 투고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를 보류하고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청한다.
20. 선임된 편집위원이 해당논문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편집위원장이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21.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한국성인간호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1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6년 12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9년 6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0년 4월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2년 6월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6년 8월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절차

1. 논문이 접수되면 출판위원회에서 먼저 투고자격과 학회지 투고요령에 합당한지를 확인한 후 출판위원장 명의로 투고자에게 접수되었음을 통보한다.
2. 접수된 논문은 출판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주제념 및 연구방법론에 따라 3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심사위원에게 다음의 논문심사지침과 함께 투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하며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① 논문심사결과는 수령 후 14일 이내에 탑재하기 바람
 - ② 심사 시 해당란에 표하고, 심사평은 온라인 상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해주기 바람
(※ 우수 논문 추천은 매년 과학기술처의 요청에 따라 추천하게 됨)
 - ③ 심사 시에 투고요령을 참조하기 바람
 - ④ 심사 시 심사위원간의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면 출판위원장에게 연락바람
 - ⑤ 심사한 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로 하기바람

신 나 미 한국성인간호학회 출판위원장
 우편번호: 0284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전화: 02-3290-4924

4. 심사결과가 입력되면 투고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논문을 수정하도록 한다. 수정된 논문은 14일 이내에 온라인 상에 등록하도록 하며, 수정내용을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정논문 앞장에 포함시킨다. 수정된 내용은 반드시 본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며, 수정표에 페이지수를 기록한다. 이때 수정논문과 파일명에 저자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정 전 내용	수정 후 내용	페이지수

5. 수정된 논문이 도착하면 출판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수정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출판위원장에게 보낸다. 출판위원장이 최종 게재완료 판정을 내린 수정논문은 NLM 형식에 맞추어 교정한 후 출판사로 보낸다. 만약 수정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판위원회에서 저자에게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